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한은영*

1. 개요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2일 유럽의회에서 전체 투표를 통해 유럽 위원회의 데이터 보호 개정안(EU Data Protection Reform)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4월 8일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통신회사들이 고객 정보를 사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유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에 대해 EU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국가 간 인식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유럽의 최근 동향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EU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236, hey@kisdi.re.kr

2. 데이터 보호 개정안(EU Data Protection Reform), 유럽의회 통과

2012년 1월 유럽 위원회는 1995 데이터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개인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개인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일반적 데이터 보호 규칙)’을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에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데이터 보호 지침의 주요 원칙을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EU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승인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니고 있다.¹⁾ 그것은 첫째, 현재의 불일치한 28개 국가들의 자국법을 대체할, 단일한 범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EU 내 28개 국가를 감독할 하나의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데이터 보호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보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Europa(2014) 자료를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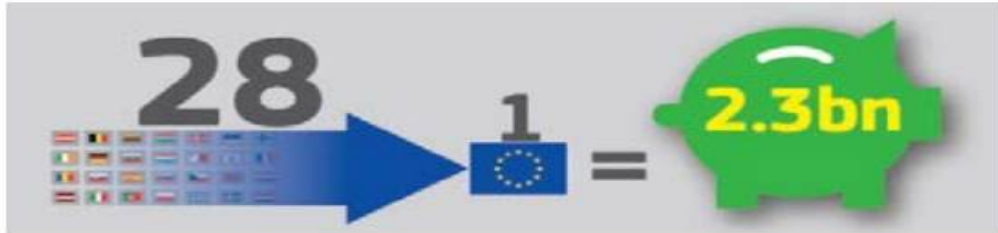
(1) 경제 성장 측면

전 세계적으로 수집, 분석되고 이동되는 개인 데이터는 경제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일부에서는 유럽 내 개인 데이터의 가치가 2020년 약 1조 유로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은 이번 데이터 보호 개정안이 갖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혁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Europa(2014)는 지적하고 있다.

첫째, 유럽 내 단일 법체제를 구현한다. 이번 규정은 하나의 범유럽 데이터 보호법

1) iSMG(2014).

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유럽 내 국가들마다 상이한 현재의 법체계를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28개 법들이 아니라 이 단일 법만을 준수하면 되고, 이것은 매년 23억 유로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추정된다.²⁾



둘째, 이번 규정은 비즈니스를 위한 원스톱숍(one-stop-shop)을 구축하게 한다. 기업들은 28개의 감독기구가 아닌 단일 감독기구에만 대응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이 EU에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더 쉬워지고 비용이 절감되게 될 것이다.

셋째,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오늘날 유럽의 기업들은, EU 외 지역에서 설립되었지만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경쟁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 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유럽 기업들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게 된다. 유럽의 규제자들은 이 법안을 강제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를 남용한 기업에게 전세계 총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했던 2012년 조항을 강화하여 그 비율을 5%로 높였다.³⁾

(2) 중소기업 측면

데이터 보호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럽 비즈니스를 위해 비용 및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하여 경제적 성장을 꾀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첫째, 28

2) Europa(2014).

3) The Wall Street Journal(2014).

개 대신 단일한 EU의 데이터 보호법을 수립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개정안의 일부 조항들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지금의 1995 데이터 보호 지침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유럽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불필요한 형식주의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 데이터 보호 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rs) 임명 면제: 데이터 처리가 중소기업의 핵심적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 한, 중소기업은 데이터 보호 관리자를 임명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 고지로부터의 자유(No more notifications): 감독기구에 대한 고지는 매년 1억 3천만 유로의 비즈니스 비용이 드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다. 이 개정안은 이것을 완전히 폐기한다.
- 액세스 요금 청구(Every penny counts):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거나 반복적일 때 중소기업은 액세스 제공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영향 평가: 중소기업은 구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영향 평가 수행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3) 이용자 측면

Europa(2014)는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과 개인들 사이의 커져가는 간극을 메울 분명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 따르면, 유럽인 10명 중 9명(92%)이 자신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은 이들 기업이 정보 유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데이터 보호 개정안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더 강화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특히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 취급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자신이 다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 이용자가 더 이상 자신의 데이터가 처리 (process)되기를 원치 않을 때 그리고 이 데이터를 유지할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을 때, 이 데이터는 삭제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과거 사건을 지워버리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의 권한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업자들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 이용자 자신이 관찰함: 이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가 요구될 때, 이용자에게 명확히 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추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이용자의 무언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은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 위반에 대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보호 우선: 새로운 EU 데이터 보호법에서 ‘Privacy by design’과 ‘privacy by default’가 주요 원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 보호 안전장치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수립되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프라이버시 우호적인 디폴트 환경이 규범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데이터 보유 지침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위반 판결

EU의 데이터 보유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은 지난 2006년 런던 및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최장 2년까지 보관해야 하고 EU 내 각국 정부는 개인 정보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테러 등 중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

4) 연합뉴스(2014).

그런데 지난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 지침이 EU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유럽사법재판소의 자료⁵⁾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의 데이터 보유 지침의 목적은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통신 서비스나 공중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발생하거나 처리되는 특정 데이터의 보유와 관련하여 EU 회원국가들의 규정을 일치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지침은 조직적 범죄와 테러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조사, 탐지, 기소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들은 가입자나 이용자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래픽과 위치 데이터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고등법원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에 EU의 기본권리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의 두 가지 기본권(사생활, 개인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이 지침의 타당성을 조사해달라 요청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우선 보유중인 데이터가 다음을 가능하게 함을 관찰하였다; (1)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커뮤니케이션한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함, (2)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식별하게 함, (3) 특정 기간 동안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특정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빈도를 알 수 있게 함.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자의 사생활에 관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지침이 이들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주무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함으로써 매우 심각하게 사생활과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보유되어지고 이어서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되는 사실은 이들의 사생활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느낌을 해당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보유가 사생활과 개인 데이

5)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2014).

터 보호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통신의 내용(콘텐츠)에 대한 지식 획득을 허용하지는 않으며, 서비스나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의 특정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 주무기관에 전송될 목적의 데이터 보유가 심각한 범죄와의 싸움 등 공공이익(즉, 공공의 안전)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데이터 보유 지침의 채택이, 과잉금지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⁶⁾을 준수함으로써 부과되어진 한계를 EU 입법기관이 넘어섰다는 의견을 재판소는 피력하면서 EU 입법기관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검토가 엄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록 지침에 따른 데이터의 보유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정하다고 간주되더라도, 이런 침해가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국한되도록 제한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보았다. 즉, 이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 지침은 어떠한 차이, 제한, 예외도 없이 모든 개인, 모든 전자통신 수단, 모든 트래픽 데이터를 망라한다.

둘째, 이 지침은 국가주무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것을 범죄의 예방, 탐지, 기소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심각성 관점에서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의 자국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라는 일반적 방식으로 단순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주무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실질적, 절차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법원이나 독립 행정기구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고 있다.

셋째, 데이터 보유 기간에 관하여 이 지침은 이해관계자나 추구 목적과 관련한 데이

6)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자료: 위키백과).

터의 유용성을 토대로 한 데이터의 유형들 간 구분 없이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부과한다. 또한 이 기간은 최소 6개월과 최대 24개월 사이에서 설정되지만, 이 지침은 객관적 기준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지침이 남용의 위험과 데이터의 불법적 액세스 및 사용으로부터 데이터의 효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세이프가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지침은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적 사항(특히 보안측정 실행 비용 관련)을 고려할 수 있게 허용하며, 데이터 보유 기간 종료 시점에서 데이터를 영구파괴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EU 내에 데이터가 보유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지침은 EU의 기본권리헌장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독립 기구에 의한 보호 및 보안의 요구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 EU 법을 근거로 수행되는 이런 관리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 보호의 중요한 요소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이 지침이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과 각국 정부는 이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⁷⁾

4. 결 어

유럽은 범EU 차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단일한 법체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법률 없이 분야별 개별법과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노력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이용자 집단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EU의 사법위원이자 유럽 위원회의 부회장인 Viviane Reding은 “유럽 의회가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데이터 보호 지침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하고 강력한 유럽 데이터 보호법이다. 이것

7) 연합뉴스(2014).

은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고 유럽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⁸⁾ 새 데이터 보호 개정안이 추구하는 단일법체계 하에서 기업들은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에 맞춰나가는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일부 규제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T산업을 비롯한 업계의 비즈니스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전달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강화된 데이터 보호법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데이터 보유 지침의 기본권 침해 판결에 따라 중범죄 예방, 조사 등을 위한 개인 정보의 공익적 활용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럽 IT 산업의 대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칙을 ‘디지털 경제를 옴아멜 족쇄’라는 극단적 평가를 내리면서 “이번에 통과된 규칙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산업은 선진적 데이터 활용 방법론들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규정에 얽매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진화해나갈 것이며, 이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⁹⁾ 또한 Google과 Microsoft 등을 대변하는 통상 단체인 TechAmerica의 Kevin Richards 수석부사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EU 방식의 광범위한 단일 규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제 발전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이와 같이,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근의 노력은 데이터의 상업적, 공익적 활용보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8) iSMG(2014).

9) ITWorld(2014).

10) 스트라베이스(2014).

참고문헌

- 스트라베이스 (2014),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 활용, “시장 자율에 맡긴다” 미국 vs. “규제 필요성 강조”, 유럽 간 가치관 대립 극심, 2014. 2. 8.
- 연합뉴스 (2014), “유럽법원, ‘데이터 보유 지침 사생활 보호 위반’”, 2014. 4. 8.
- 위키백과 (2014), 과잉금지의 원칙, 2014. 4. 14
- ITWorld (2014), “최대 벌금 매출 5% 혹은 1억 유로’,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법안 통과”, 2014. 3. 17.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4).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Press Release, No 54/14, 2014. 4. 8.
- EUROPA (2014). Progress on EU data protection reform now irreversible following European Parliament vote, European Commission, MEMO/14/186, 2014. 3. 12.
- iSMG (2014). EU Data Protection Reform Endorsed, 2014. 3. 13.
- The Wall Street Journal (2014). EU to Reform Data Protection Rule, 2014. 3. 12.